

제안설명서

- 일 시 : 2021. 2. 26.(금)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17호, 시장 발의)

행 정 국

-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의안번호 제221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20년 10월 20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성과우수자 보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휴가 등 복무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 우리시 공무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하고 실질적인 성과 보상과 휴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개편하여 돌봄대상을 미성년 자녀에서 배우자·부모·조부모·손자녀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유급으로 최대 3일간 부여한 휴가일수에 무급휴가를 더해 최대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였으며,

8시간 미만 잔여 연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대신 차년도 연가로 저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토요일·공휴일에 8시간 이상 초과근무 할 경우 부여하던 대체휴무를 평일 초과근무 시에도 부여하고 그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하였으며, 재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재해구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국가공무원과 같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6.

행정국장 김 태 균